

진술서

성명	김 ○ ○ (金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진술인의 지위	전(前) ○○○○○○○○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 이하 'SS') 사내이사 겸 최대주주 (2020년 ~ 2023. 7. 5.). SS는 동물용 의약품·사료를 직접 제조하는 제조회사이고, 본인은 그 제조·경영을 책임진 당사자였음. 본인은 본건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함.

본인은 아래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며, 그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합니다. 본 진술서에 첨부한 자료는 모두 본인이 직접 보유·확인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사건 표시 : 최○○(◆◆◆◆ KKK부장)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 등 고발사건

1. 진술의 요지 —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실물 공급 의사와 시장 예측 실패)

본건은 ◆◆◆◆ KKK부장 최○○(본건 거래의 실무 담당책임자인 ◆◆◆◆ AAA팀 김◇◇ 이사의 상관)에 대한 고발사건이고, 본인은 본건 거래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참고인으로 진술합니다. 본건 고발의 취지는 ◆◆◆◆ 측이 '실물거래

없이 SS와 통정하여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본건 거래의 실제 경위를 아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S와 ◆◆◆◆간 모든 거래 및 사후 정리는 ◆◆◆◆의 대표이사 CC○○가 날인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SS는 물품공급계약(증 제3호증)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문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30일 이내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물품공급은 주문일로부터 60일 또는 당사자간 별도 합의한 날까지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조 제2항). SS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 10.경 사후정산(증 제4호증 및 제5호증)을 하였습니다. 모두 물품공급계약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인이 계약의 서명권자가 아닌 최○○과 공모하여 별도의 가공거래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본인(SS)은 제품(반려동물 사료 및 동물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의미하며 이하에서 '물품'으로만 표시함)을 직접 만드는 제조업자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물품공급계약(2021. 9. 7. 체결)에 따라 ◆◆◆◆과 SS 모두 실제로 물건을 생산하여 납품할 진정한 의사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제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동기가 있으려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는데, 본건의 구조는 정반대였습니다.

본건 거래가 사후적으로 세무상 신고 매출과 실제 공급량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당시의 진정한 납품 의사:** 2021. 7.경 ◆◆◆◆은 SS의 지분 약 21%를 취득하였고, 2021. 9. 7.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SS가 생산하는 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실제 거래는 그 이전인 2021. 8.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S는 ◆◆◆◆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공급사업자이고, ◆◆◆◆은 공급받은 물품을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의 물품 발주와 SS의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양사 모두 신규 반려동물 사업(펫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며 실제로 물품을 대량 생산하여 전량 납품·판매하려는 확고한 의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실물 없는 가공 거래를 공모한 것이 아닙니다.

2. **영업 과정에서의 시장 예측 실패:** 그러나 실제 본격적인 영업이 진행되자, 시장(대리점)의 반응은 ◆◆◆◆ 영업 부서의 예상과 달리 냉담했고 대리점들의 판매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예상과 달리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는 '시장 예측 실패'와 판매 부진**이 발생했습니다.
3. **무리한 사업 강행과 반품 유예 약속:** 원래대로라면 물품공급계약 및 상거래 관례에 따라 즉시 반품 처리하고 기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입니다. 이에 본인은 판매 부진을 확인한 즉시 2021년 하반기에 ◆◆◆◆ 김◇◇ 이사에게 반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에 의하면, SS는 ◆◆◆◆의 물품주문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30일이내에 대금을 수령하게 되고, 물품주문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별도 일자에 물품을 공급하면 되나,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반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반품, 즉 세금계산서 수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나중에 물품공급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불이행의 문제이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 제1호)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8번 항목에서 상세히 진술합니다.

그러나 ◆◆◆◆ 김◇◇ 이사는 자신들의 사업 계획을 계속 밀어붙였고, 반품을 요청하는 본인에게 "조금만 기다려 주면 YYY의 영업망으로 물건을 다 처리할 수 있다. 정 안 되면 2022년 1분기내에 반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반품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강권했습니다.

◆◆◆◆이 대리점 기타 방식으로 판매를 원활하게 했다면, 제조업자인 SS는 당연히 이익을 얻기 위해 철야 근무를 해서라도 물품을 제때에 공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점 판매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고 반품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 대리점 중의 하나인 △△△ 대리점의 경우 2022. 1.경 거래 사실 부인서를 세무서에 확인서까지 제출하면서 물품 판매를 거부했습니다(증 제1호증 및 증 제2호증).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진술인은 생산을 늘리기 보다 반품이 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4. **◆◆◆◆의 반품 처리 미이행:** 결과적으로 **◆◆◆◆**의 담당부서 AAA팀의 팀장 김◇◇ 이사가 약속했던 2022년 1분기내에 반품 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사후 정산을 질질 끌면서 문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본인이 본건 거래의 발주·물량·매출 관련 사항을 협의한 상대는 실무 책임자인 AAA팀 김◇◇ 이사였고, 그 상관인 최○○ KKK부장과는 본건 매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참고인으로서, 최○○ 사업부장이 본건 거래(특히 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바를 진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자인 본인은 대리점에서 제품이 실제로 팔려야만 이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만든 제품이 팔리지 않고 반품(환입)되면, 이미 투입한 원재료비·생산비를 고스란히 손해로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는 팔리지도 않을 물량을 무리하게 생산하여 허위로 매출을 늘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반품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생산을 자제하고 **◆◆◆◆**에 반품을 요구할 동기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대리점 사장들로부터 판매부진을 직접 확인한 뒤, **◆◆◆◆** KKK부 AAA팀 김◇◇ 이사에게 반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당사자였습니다. 가공매출에 가담하기는커녕 그로 인한 손해를 막으려 한 쪽이 바로 본인입니다.

본건에서 진짜 문제가 된 것은, 그 반품 처리가 제때(2022. 3. 사업보고서 공시 이전) 완료되지 못하고 2022. 10.경으로 미루어진 것이며, 그 지연은 본인이 아니라 ◆◆◆◆ 측의 무리한 사업 강행과 처리 지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 측(특히 재무담당 임원 김○○)은 이 미정리 상태를 악용하여 SS의 자산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확보한 다음(증 제4호증, 제5호증 참조), 2023. 7. 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술인 본인으로부터 SS의 경영권 지분까지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본건의 실체입니다. 진술인은 ◆◆◆◆ 대표이사 CC○○와 재무팀 김○○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도대체 누구와, 어떤 이익을 위하여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하에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2. 제조업자인 본인에게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동기가 없었습니다.

가. SS는 제조회사이고, 본인은 그 제조를 책임진 당사자입니다

SS는 ○○ ○○에 사료공장과 GMP 제약공장을 두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및 반려동물 사료를 직접 제조·판매해 온 비상장 제조회사입니다. ◆◆◆◆이 2021. 7.경 지분 투자를 하기 전에는 지분의 대부분을 본인 및 본인가족과 지인들이 소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였습니다. 본인은 SS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제조의 주체였습니다.

SS는 ◆◆◆◆ 김◇◇ 이사의 요청에 따라 ◆◆◆◆ 거래 대리점에 직접 물품을 배송하였습니다(이른바 '직송코드 방식'). ◆◆◆◆은 내부관리시스템상 대리점에 공급할 제품이 회사 창고에 있어야 대리점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직송코드 방식에 의할 경우 물품 공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발급되었다고 하고, 그걸 자문세무사(박○○)가 문제를 삼자, 2022. 10.경 세무서에 수정 신고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술인은 ◆◆◆◆ 재무담당 임원 김○○을 통해 2022. 10. 경쯤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제조업자의 손익 구조 — 팔려야 이익, 반품되면 손해

제조업자는 ① 원재료를 매입하여 ② 제품을 생산하고 ③ 그 제품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비로소 이익을 실현합니다. 만약 생산한 제품이 대리점 단계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반품(환입)되면, 제조업자는 이미 지출한 원재료비와 생산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손실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제조업자에게 '팔리지 않을 물량의 과다생산'은 곧 손해의 누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만약 실물 없는 허위매출을 일으켜 단기 매출액을 부풀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매출액·실적이 필요한 매입측(◆◆◆◆)이지, 생산비를 부담하는 제조업자인 본인이 아닙니다. 가족회사에 불과한 SS는 허위매출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었고, 오히려 반품 위험이라는 손해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 그래서 본인은 생산을 늘리지 못하였고,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원래 대리점 판매가 원활하였다면, 제조업자인 본인으로서는 당연히 생산능력을 늘려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대리점 사장들과의 접촉을 통해 실제 판매가 부진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증 제1호증 및 제2호증 참조).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곧 반품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반품은 곧 본인의 막대한 손해를 의미하였습니다. ◆◆◆◆의 대리점 중에는 본인이 직접 소개한 곳이 많아서 본인은 대리점의 판매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의 대규모 발주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제대로 늘리지 못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 ◆◆◆◆ 담당 팀장인 김◇◇ 이사에게 이미 발주된 물량의 반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가공매출에 가담한 자의 행동이 아니라, 그 반대 위치에서 시장 예측 실패로 인한 사후 손해를 피하려 한 제조업자

의 합리적 대응이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물품 납품기한 및 반품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상세한 것은 후술함).

3. '통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양사는 실물 납품의 진정한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죄(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통정에 의한 거짓거래 세금계산서 수수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 즉 '통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에는 그러한 통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제조사의 진정한 공급 의사: 거래 초기 ◆◆◆◆은 신규 사업 성공을 전제로 대규모 매출 목표를 가졌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SS 역시 ◆◆◆◆으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본건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 ○○ 제약공장 기기 구입, 창고 증축, 인건비 등에 전액 투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실물 생산 인프라 확충에 대금을 전액 사용한 사실 자체가 실물 거래의 확고한 의사를 증명합니다.

② 발주·시스템의 주도권: 발주의 규모와 시점, 직송코드를 통한 배송처리, 세금계산서 발급의 시기는 모두 원사업자이자 주요주주인 ◆◆◆◆ 측의 요구와 전산 시스템 운용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본인은 그 구조를 설계하거나 주도한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③ 반품 요구라는 본인의 일관된 태도: 본인은 판매 부진을 확인한 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품 및 세금계산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허위매출을 공모·유지하려는 자라면 결코 취하지 않을 행동이며, ◆◆◆◆ 측이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 기다려라, 정 안 되면 반품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인이 누구와, 무슨 이익을 위해 통정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될 수 없습니다. 통정이 부정되는 이상, 본건을 공급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은 김◇◇ 이사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을 뿐, 김◇◇과 최○○ 사업부장간의 협의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본건 고발의 대상은 최○○ KKK부장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본건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 협의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는 그 부하직원인 AAA팀 김◇◇ 이사였습니다.

발주 물량과 시점, 공급 일정은 물론, 판매부진에 따른 반품 요구도 본인은 김◇◇ 이사에게 하였습니다. 본인은 2021년 하반기에 김◇◇ 이사에게 이미 공급된 물량의 반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김◇◇ 이사가 그 반품 요구에 관한 사항을 상관인 최○○ 사업부장과 협의하였는지는 본인으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은 최○○ 사업부장과 본건 매출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이 최○○ 사업부장과 대리점을 통한 매출 증대 협의를 논의한 것은 2022. 6.경입니다. 그 이전에는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참고인으로서, 최○○ 사업부장이 2021. 8.부터 2022. 5.까지 본건 거래의 구체적 내용(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사항)을 지시·협의·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인의 직접 경험에 기초하여 진술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건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정 등 세무 관련 사항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은 ◆◆◆◆의 재무·회계 담당 임원인 김○○(2022년 당시 상무, 이후 전무)이었습니다. 매출의 인식과 세금계산서의 발급·취소(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포함), 반품충당부채 등 회계처리는 영업 실무자인 김◇◇ 이사의 소관이라기보다, 재무·세무 부서를 총괄한 김○○이 그 내용과 처리시기를 파악·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5.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은 ◆◆◆◆ 재무팀(김○○)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거래구조에 판매부진과 반품 문제가 내재해 있다는 사정,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취소 문제는, 늦어도 △△△ 대리점의 거래사실부인

확인서(2022. 1. 17. 관할 세무서 접수, 중 제2호증)를 통해 ◆◆◆◆ 재무·세무 부서에 객관적으로 드리났습니다. 위 확인서는 대리점이 '해당 거래가 없음'을 세무서에 직접 신고한 문서로서, 그 대상 세금계산서(2021. 12. 31.자, 공급가액 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의 작성자 명의는 ◆◆◆◆ 대표이사 CC〇〇였습니다.

이러한 확인서가 세무서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의 재무·세무 부서가 보고받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본건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정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파악·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영업 실무자인 김◇◇ 이사가 아니라, 재무·회계를 담당한 김◎◎(2022년 당시 상무, 이후 전무)이었습니다. 즉 본건은 본인이 통정하여 주도한 문제가 아니라, ◆◆◆◆ 재무팀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적시에 정리하지 아니한 사안입니다.

6. 진짜 문제는 '반품 시점의 지연'이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본건에서 정작 문제가 된 핵심은 '실물 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반품(환입) 처리가 ◆◆◆◆ 측의 사정으로 적시에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판매부진이 확인되고 반품이 요구된 이상, 늦어도 2022. 3. 제 〇〇기(202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공시 이전에 반품(환입) 처리와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 측이 자신들의 영업 실적 관리 및 무리한 사업 계획 강행을 위해 처리를 미루다가, 그해 2022. 10. 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정산이 이루어지면서 본건이 문제되었습니다.

본인은 일찍부터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반품의 실제 처리(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금·자산 정산 등)는 원사업자이자 거래의 우월적 지위에 있던 ◆◆◆◆ 측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은 무공급 여부가 아니라 환입 시점의 특징과 그에 맞춘 작성일자·신고기간 귀속의 적정성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후적 시장 예측 실

패 및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시점 지연의 책임을 제조업자인 본인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7. ◆◆◆◆ 측은 이 상황을 악용하여 SS의 자산과 경영권을 가져갔습니다

본건의 미정리 상태는 ◆◆◆◆ 측, 특히 김○○에 의하여 SS의 자산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1) 2022. 10. 21. 같은 날, ◆◆◆◆과 SS는 ① 채무변제약정서(증 제5호증의 2)와 ②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4호증)를 동시에 체결하였습니다. 위 약정서 제1조는 본건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양사 간 거래 오류로 본 채무'로 명명하고 그 금액을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가공 거래가 아니라 상거래 진행 과정에서의 사후 정산 대상 채무임을 양사 간에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그 채무는 ① 부동산매매대금 중 〇〇.〇〇억 원으로 상계 처리되고, ② 잔액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은 4일 뒤인 2022. 10. 25. SS의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담보되었으며, SS의 생산제품으로 2024. 6. 30.까지 현물상환하도록 약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〇〇억 원 상당의 SS 자산이 ◆◆◆◆의 양수·담보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3) 이어서 2023. 7. 5. 본인은 SS의 경영권 지분을 ◆◆◆◆ 측에 양도하게 되었고, 이로써 ◆◆◆◆은 본건 거래의 상대방이자 객관적 증빙을 보유한 SS를 자기 지배 하에 편입하였습니다. 즉 본건 미정리 상태를 빌미로 SS의 자산 처분권을 먼저 확보한 뒤 경영권까지 가져간 것이 본건의 실체입니다. 경영권 빼앗는 과정도 매우 악랄하였습니다. SS가 ◆◆◆◆에 독점적으로만 공급해야 하는 물품 공급계약상 의무를 악용하여(제3조 제1항), 2022. 10.이후 주문량을 급격히 줄여 SS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후 진술인 본인의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특히 위 채무변제약정서가 채무를 '생산제품으로 현물상환'하도록 정한 것은, 본건 거래가 실물 제품의 공급·반환 및 사후 조절을 전제로 한 정당한 상거래였음

을 ◆◆◆◆ 스스로 문서상 인정한 것입니다.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였다면 '생산제품에 의한 현물상환'이라는 약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8. 법리적 검토 — 본건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법적 자문 참고)

이하에서는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¹), ② 물품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관계, ③ 사후 미이행의 법적 성격, ④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⑤ 판례 법리의 적용, ⑥ 판례가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 순서로 각 쟁점을 검토합니다.

가. 쟁점 ① —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² 제3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두 시기 사이의 기간

¹ 본건 쟁점기간(2021.8부터 2022.5)에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8577호, 2021. 12. 8., 개정되기 전의 법률 및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7조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²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발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본건 물품공급계약서 제9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고, 제9조 제1항은 "YYY은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제품에 대하여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일 월말 기준 30일(삼십일) 이내에 현금(계좌이체)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①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를 "매월 말일"로, ② 대금 지급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월말 기준 30일 이내"로 계약서에 분리하여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합니다.

따라서 SS가 매월 말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법률상 의제됩니다. ◆◆◆◆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실제로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이를 확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적법한 공급시기인 이상, 본건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의 소지 자체가 없습니다.

나. 쟁점 ② — 물품 공급시기(주문일로부터 60일)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관계

본건 계약의 구조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결제가 완결되는 시점(매월 말일 발급, 그로부터 30일 이내 결제)과 물품의 실제 인도기일(주문일로부터 60일, 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별도 일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상당한 간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계약서 제7조 제1항,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는 바로 이러한 구조, 즉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계약서에 따로 정해져 있고 두 시기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함으로써, 물품의 실제 인도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물품이 아직 인도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예정된 구조이지,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법률상 공급시기로 의제되므로 그 이후의 실제 납품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쟁점 ③ — 주문일로부터 60일 이후 물품이 공급되지 않은 것의 법적 성격 (계약불이행 문제이지 부가가치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

계약서 제7조 제1항·제2항은 "최초 납품기일은 주문일로부터 60일로 정하되, 당사자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지급이 완결된 이후에도 물품의 인도는 그보다 나중인 주문일로부터 60일(또는 합의된 별도 일자)까지 이루어지면 됩니다.

진술인이 2021.하반기에 김◇◇ 이사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음은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고, 이에 대해 ◆◆◆◆의 담당부서(AAA팀) 책임자인 김◇◇ 이사는 ◆◆◆◆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반품을 늦춰달라 했고, 만약 판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2022. 1분기, 즉 2021년말 기준 재무제표 완료 전에 수정하면 된다고 하였던 바, 따라서 물품 납기일은 적어도 2022. 3.까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기된 것입니다. 이 점은 ◆◆◆◆ AAA팀 김◇◇ 이사를 조사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 SS가 이 납품기일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은 시장 판매부진 및 대리점 판매능력 부족이라는 외부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의 문제입니다. 그 구제수단은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에 따라 2022. 10. 경 사후 정리를 완료한 것입니다(증 제4호증, 증 제5호증).

이미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게 성립한 공급시기 의제의 효력은 사후의 납품 미이행이라는 민사적 사유로 소급하여 부인될 수 없습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소급하여 허위로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이후 반품(환입)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세법

상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별개의 과세절차에 의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주문일로부터 60일(또는 당사자 합의 일자)까지 물품이 공급되지 않은 것은 계약불이행의 문제이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합니다.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0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 이후 물품 인도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는 사적 계약 영역의 문제입니다. 계약에 따라 사후 정리(세금계산서 수정 포함)를 2022. 10.경 완료한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위법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쟁점 ④ — 부가가치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규율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이 없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의제됩니다. 즉 법률상 공급시기에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조세범처벌법이 요구하는 "공급 없음"이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0조 제2항의 통정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도저히 성립할 수 없음은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른바 '자료상'은 대금의 수령 자체가 없거나 형식적 자금만 오가는 가운데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건은 거액의 대금이 실제로 계좌이체로 입금되어 원부자재 매입, ○○ 공장 설비 구입, 창고 증축, 인건비 등 생산 인프라에 전액 투입되었으므로 자료상과는 그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그 자체로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반

품(환입)에 따른 본건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무공급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공급 없음"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쟁점 ⑤ —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공급 없이 발급한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특히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은, 사업자가 설비 납품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어음 부도로 설비 제작이 약 40% 공정에서 중단된 채 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거래(공급계약)가 존재하는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위반이나 사후의 일부 미이행이 있더라도 자료상의 무공급 가공거래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본건은 위 판례 사안보다 실물거래성이 현저히 강합니다. ① 양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유효한 물품공급계약(2021. 9. 7.자)이 체결되어 있고, ② ◆◆◆◆의 발주에 따라 SS가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0일 이내에 현금(계좌이체)으로 대금을 실제 수령하였으며, ③ 수령한 대금 전액을 원부자재 매입·공장 설

비 구입·창고 증축·인건비 등 생산 인프라에 투입하였고, ④ 일부 인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한 판매부진이라는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었으며, ⑤ 미정리 부분조차 2022. 10. 21.자 채무변제약정에 따른 대물변제(SS 생산제품에 의한 현물상환)로 사후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위 채무변제약정서 자체가 본건 채무를 "양사 간 거래 오류로 본 채무"로 명명하고 "생산제품으로 현물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스스로 실물거래를 전제로 한 상거래임을 문서상 인정한 것입니다.

바. 쟁점 ⑥ —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한 구속력 있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

위 대법원 판결은 실물거래의 요건으로 "공급가액·공급품목·단가·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요구하는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본건 물품공급계약서는 ① 약 60여 개 품목과 처방의 특정, ② 각 품목별 원 단위 단가의 명시, ③ 월별 서면 발주에 의한 수량 확정 절차와 지체상금 규정, ④ 세금계산서 발행일(매월 말일)과 대금지급 시기(30일 이내)의 명시, ⑤ 반품·교환·정산에 관한 명문 조항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요건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위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양사 대표이사가 날인한 처분문서인 물품공급계약서(증제3호증)에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핵심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급품목과 처방의 합의입니다. 위 계약서 별첨 2 가격협약서는 엔로프로 쟁 50, 포레신, 케타딘 샴푸, 살리퍼 샴푸, 마이클로 샴푸, 클로헥스 4% 샴푸, 뉴에버스킨, 더모풋, 실키&소프트 오트밀 샴푸, SS 사이언스 시리즈, 에스비 벳케어 오티가드, 액토닐 샴푸, 에스비 트리스이디티에이, 헤파카르틴, 글루코틴 F·T, 벳스크립션 시리즈(퍼피·어덜트·머쥬어 7+·시니어 12+), 네츄리스 시리즈, ON/C(온코케어), U/C(유리너리케어), RH/C(레날하트케어), J/C(조인트케어), A/C(알러지케어), O/C(오베시티케어), 오라맥스 시리즈, 베네프로, 하트 프로텍

등 약 60여 개 품목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각 품목의 처방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제품표준서'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계약서 제2조 제2호). 자료상의 가공거래에서는 결코 작성될 수 없는 수준의 품목·처방 특정이 본건 계약서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단가의 합의입니다. 위 가격협약서는 위 60여 개 품목 각각에 대하여 VAT 별도인 공급가격을 원 단위까지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예: 엔로프 로젠 50 300T → ○○,○○○원, 케타딘 샴푸 250ml → ○,○○○원, 케타딘 샴푸 1gallon → ○○,○○○원, 네츄리스 어덜트 1.2kg → ○,○○○원, RH/C 1.5kg → ○,○○○원 등). 가격협약서 말미는 '공급가격은 계약제품의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원료비, 포장재료비, 가공비, 제조작업 시 공수비용, 품질검사 비용, 운송비, 사전광고 심의비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고 단가 구성의 근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서 제8조는 위 단가를 본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되 원재료비 10% 이상 상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 당사자 서면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여, 단가 합의의 구속력을 절차적으로도 강제하였습니다.

셋째, 수량 확정 방식의 합의입니다. 계약서 제7조 제1항은 "YYY은 당월 판매소 요량에 대해 해당 월의 최소한 30일 전에 회사에게 계약제품을 서면으로 주문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 계약제품을 YYY에게 납품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매월 ◆◆◆◆이 SS에 서면 발주를 함으로써 거래수량이 월 단위로 확정되는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의 납기 준수 의무와 함께 지체일수당 주문대금의 1/1000을 지체상금으로 부담하도록 정하여, 위 발주·납품 합의의 구속력을 손해배상의 형태로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계약제품의 최소발주단위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고 정하여 수량의 최소 단위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넷째,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관한 합의입니다. 계약서 제9조 제1항은 "YYY은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제품에 대하여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일 월말

기준 30일(삼십일) 이내에 현금(계좌이체)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본건 거래에서는 ①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②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절차가 사전에 합의되어 있었던 것이며, SS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그 발급 단위는 본 계약서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자료상이 임의로 발급하는 가공 세금계산서와는 그 발급 근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건 거래에서는 위 계약상 거래 절차가 그대로 준수되었습니다. 즉 ① ◆◆◆◆은 위 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SS에 서면으로 발주를 하였고, ② SS는 위 제9조 제2항에 따라 매월 말일자로 그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③ ◆◆◆◆은 위 제9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월말 기준 30일 이내에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본건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의 발주 → SS의 세금계산서 발급 → ◆◆◆◆의 30일 이내 결제'라는 사전 합의된 거래 절차의 결과로서 발행·수수된 것이고, 그 발행 시점·단위·결제 방식 모두 계약상 합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후에 시장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일부 물품의 인도가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 자체는 사전 합의된 계약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미이행 부분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사후 조정의 대상일 뿐, 결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반품과 정산에 관한 명문 조항의 존재입니다. 계약서 제13조 제2항은 "YYY은 YYY의 거래선 및/또는 소비자로부터 반품된 계약제품에 대하여 회사에게 신규제품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반품 시 신규제품 교체를 명문화하였고, 제23조 제2항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시, 계약종료시점에 YYY 및 그 거래처가 소지한 계약제품으로 인하여 YYY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그 대금은 계약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

조 제4항은 품질보증기간 내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규제품 교환·반품 의무를, 제7조 제4항은 부족·불량제품에 대한 보충·교환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실물 제품의 인도·반환·재고·정산을 전제로 한 약정으로서,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상의 가공거래에서는 애초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조항들입니다.

결론: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한 실물거래가 명백히 존재하는 본건은 자료상의 무공급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사후적 미이행이나 반품 지연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습니다.

사. 소결 — 쟁점별 결론 요약

- ①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의제됨 → 부가가치세법 위반 없음.
- ② 물품 공급 미이행(주문일로부터 60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일 경과): 계약불이행의 문제(민법상 채무불이행) → 부가가치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아님.
- ③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공급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공급 없음"이라는 구성요건 미충족 →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성립.
- ④ 판례 법리: 구속력 있는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이상, 사후 물품공급 미이행을 자료상의 무공급 가공거래로 의율할 수 없음(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9. 결어

정리하면, 본인은 제품을 직접 만드는 제조업자로서 사후 반품 손해를 떠안을 위험이 명백한 허위매출을 주도하거나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양사 공히 실제 물품을 납품하여 대대적으로 판매할 진정한 의도가 합치되어 있었으나, 실제 영업 과정에서 예상 밖의 심각한 판매 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인이 정상적인 반품 및 세금계산서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 김◇◇ 이사가 무리하게 사업 계획을 밀어붙이며 "◆◆◆◆ 브랜드를 이용해서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정 안 되면 나중에 반품해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약속하여 사후 정산 시점이 뒤로 지연된 것이 본 사건의 명확한 실체입니다.

양사 대표이사가 날인한 물품공급계약에 정확히 부합하게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진술인과 최○○이 공모하여 별도의 가공거래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의 재무담당 임원 김○○과 대표이사 CC○○은 오히려 이러한 지연으로 발생한 미정리 상태를 빌미로 삼아 SS의 자산 처분권을 확보하고 중국적으로 경영권까지 가져갔습니다. SS가 ◆◆◆◆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품계약상의 규정을 악용하여 2022. 하반기부터 주문 물량을 대폭 줄여 SS의 재무구조를 급격히 악화시킨 후 김○○ 본인을 굴복시켜 2023. 7. 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와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제조업자 본인을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 및 조세범처벌법의 법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사관님(검사님)께서 위 사정을 충분히 살피시어, 본건 거래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고 본인에게 통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나 가담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0. 첨부 증거 목록

- 증 제1호증 : ◆◆◆◆ 발행 2021. 12. 31.자 전자세금계산서 (대리점

△△△, 공급가액 ○○○,○○○,○○○원, 작성자 명의: 대표이사 CC○○)

- 증 제2호증 : △△△ 대표 김☆☆ 명의 2022. 1. 17.자 거래사실부인확인서 (관할 세무서 접수)
- 증 제3호증 : SS-◆◆◆◆ 2021. 9. 7.자 물품공급계약서 (독점공급 · 지정 장소 배송 조항)
- 증 제4호증 : 2022. 10.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 제4조: 채무변제약정 연결 · 상계 명시)
- 증 제5호증의 1 : 2022. 10. 25.자 근저당권 설정 및 생산제품 현물상환 약정 관련 자료
- 증 제5호증의 2 : 2022. 10. 21.자 채무변제약정서 (제1조 '거래 오류로 본 채무' 명명, 제2조 ○,○○○,○○○,○○○원 확정)
- 증 제6호증 : 2021년 ◆◆◆◆ 거래처별 현황 자료 (2021. 12. 15.자, 발주 주도 및 판매능력 인지 현황)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진술인 김 ○ ○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귀중